

의안번호	2214223
의 퇴 인	허영의원
회 답 일	2025.12.1.
추 계 번호	25D6128

소비자안전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, 회의 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00만원씩 총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협의체 회의참석수당 (안 제11조제1항)	6	6	6	6	6	30

주: 본 추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위해정보의 통합 제공)	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(이하 “관계 행정기관등”이라 함)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·통합하고 이를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교육 및 홍보)	국가등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9조(국제협력)	국가등은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해정보의 공유 2. 소비자안전 관련 전문가의 국제교류 3.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·운영 4.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5. 그 밖에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4	안 제11조(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)	해외위해재화의 수입·판매·제공 등을 제한·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·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2조(소비자안전 조사 등)	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등과 관련된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1. 특정 재화등과 관련된 피해정보가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다수 수집된 경우 2.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·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(이하 “등록소비자단체”라 함)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.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관하여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77조를 준용함(제2항)	의무규정
		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를 실시한 후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함. 다만,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		제3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징수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6	안 제21조(소비자안전 센터의 설치)	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(제1항),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,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7	안 제24조(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)	소비자안전센터는 피해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소비자와 관계행정기관등에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(제8항)	의무규정
8	안 제25조(소비자단체 소송)	「소비자기본법」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피해의 금지·중지를 구하는 소송(이하 “단체소송”이라 한다)을 제기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30조(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)	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.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		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제6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위해정보의 통합 제공)	- (미대상)	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www.ciss.go.kr) 운영 중
2	안 제8조(교육 및 홍보)	- (미대상)	「소비자기본법」 제14조, 제21조, 제35조, 제51조 등에 동일한 사항 규정
3	안 제9조(국제협력)	- (미대상)	「소비자기본법」 제27조에 동일한 사항 규정
4	안 제11조(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)	0	-
5	안 제12조(소비자안전 조사 등)	- (미대상)	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제품안전기본법」 등 개별법률에 동일한 사항 규정
6	안 제21조(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)	- (미대상)	「소비자기본법」 제51조에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
7	안 제24조(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)	- (미대상)	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www.ciss.go.kr) 운영 중
8	안 제25조(소비자단체소송)	- (미대상)	「소비자기본법」에 단체소송의 법적 근거 마련
9	안 제30조(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)	- (미대상)	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협의체의 민간위원 수당을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위원 10명, 민간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
- 본 추계에서 협의체 회의는 연 4회(분기별 1회) 개최되고, 회의참석수당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같이 30만원(회의참석수당+안전검토비)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위원회의 회의일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, 회의참석수당의 추가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회의참석 수당	지급인원(A)	5	5	5	5	5	—
	지급단가(B)	0.3	0.3	0.3	0.3	0.3	—
	회의일수(C)	4	4	4	4	4	—
	소계(D=A×B×C)	6	6	6	6	6	30

주: 본 추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